

2021년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 제도

1. 변경내용 총괄

국가	주요내용	적용시점
EU	· 동물성 원료 사용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규정 변경	'21.04.21.~
	·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로 대 영국 수출환경 변경	'21.01.01.~
	· 설탕세 도입 관련 변경사항	'21.01.01.~
	· 소매용 식품에 대한 트랜스지방 제한	'21.04.~
	· 대체 제품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제한	'21.~
미국	· FDA 식품 추적에 필요한 추가 정보 기록 작성 및 보관 규정 제언	'21.~
	· 참깨, 알러지 유발물질로 지정	
	· 발효식품의 글루텐프리 성분 라벨링 변경	
중국	· 통조림 식품 국가표준(GB) 발표	'21.08.01.~
	· 보건식품 원료목록 제정	'21.03.01.~
대만	· 벌크 식품 라벨링 규정 실시	'21.01.01.~
	· 돼지고기 수출 시 원산지 표기 강화	'21.01.01.~

2. 국가별 변경내용

□ EU

○ 동물성 원료 사용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규정 변경('21.4.21.~)

- 관련규정 : Regulation (EU) 2017/625
- 대상품목 : 14개 HS코드(4단위) 관련 복합식품

1601(소시지), 1602(육류 조제품), 1603(육즙·어류즙), 1604(생선제품), 1605(새우·게 등), 1901(곡물가루), 1902(스파게티·면), 1905(빵, 비스킷), 2004(옥수수·감자 혼합물), 2005(채소 조제품), 2103(장류·소스류, 마요네즈), 2104(수프), 2105(아이스크림), 2106(커피 프리머, 단백질 농축물)

- 주요내용

- EU가 복합식품 수입을 승인한 국가·작업장에서 생산한 경우에 한해 수출 가능, EU의 수입 승인 국가목록은 작성 중
- 각각의 동물유래 성분은 EU 회원국 또는 EU 잔류물질 승인목록 (2011/163/EU)에 등재된 제3국에서 유래(원료 출처를 EU에 통보·요청하여 상기 국가목록에 등재 필요)해야 함

현 행	변 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현재 EU에서 수입 허용하는 한국산 동물 원료는 수산물(축산물 불가) ▶ 다만, EU에서 허용하는 제3국산 우유와 난류 함유 제품(20% 미만)과 한국산 수산물이 함유된 실온보관 복합식품(50% 미만)은 수의검사 제외품목으로 수출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우유 및 난류 함유 식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함유량 50% 미만 모든 복합식품은 시설인증서 제출 필요 * 계란성분 3% 함유한 마요네즈, 유제품 함유 과자류는 시설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▶ 수산물 함유식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함량과 관계없이 원료에 수산물 포함 시 수출작업장 등록 필요 * 젓갈 포함된 김치, 다시마 포함 라면의 경우 작업장 EU 승인 필요

* 상세규정(시설인증서 서식, 검사제외식품 목록 등) 개정 중으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

○ 브렉시트(Brexit) 전환 기간 종료로 영국 수출환경 변경('21.1.1.~)

- EU·영국 간 무역 협상 타결('20.12.24)로 EU ↔ 영국 간 상품이동 시 무관세 적용되나, 검역·통관절차 부활
- 한·영 FTA 타결('19.8)로 영국으로 직수출 시 관세는 현재 EU 수출 시와 동일(한·EU FTA 10년 차 양허 스케줄 적용)
- 한 ↔ 영 간 상품 운송 시 EU를 경유할 경우, 3년 한시적으로 한·영 간 “직접운송”으로 간주
- 라벨링 등 수입식품 관련 별도의 제도 운영 예정이며, 사전 포장 식품의 경우 단기간에 변경되는 규정 사항도 있음

☞ “브렉시트 진행경과 및 향후 수출영향 전망” : 붙임 참조

○ 국가별 설탕세(Sugar Tax) 도입 관련 변경사항

- (폴란드) '21.1.1부터 음료, 저알코올 음료에 “소다세(Soda Tax)” 도입
-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 1L 당 0.11유로 과세. 설탕 함량이 5g/100ml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설탕 1g 당 0.01유로 추가 부과
- 소다세 규정에 카페인세(0.02유로/L), 타우린세(0.26유로/L)도 포함

- (이탈리아) ‘20.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설탕세 도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‘22년 1월 발효 예정
 - 설탕 함유 음료 100L 당 10유로 세금부과.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의 경우 2Kg 당 0.25유로 세금부과 예정
- 현재 영국, 프랑스, 벨기에, 포르투갈, 핀란드, 노르웨이, 헝가리 등 10여 국가가 도입·시행* 중. 설탕세 도입 이후 설탕 함유량을 줄인 신제품이 다수 개발·출시되고 있음
 - * 핀란드·헝가리(‘11), 프랑스(‘12), 벨기에(‘16), 포르투갈·노르웨이(‘17), 영국(‘18.4)

○ 소매용 식품 트랜스지방을 100g 당 2g으로 제한(‘21.4월~)

- 관련규정 : Commission Regulation (EU) 2019/649 of 24 April 2019
- 주요내용
 - 심장질환 감소 등 목적으로 ‘19.4월 유럽위원회에서 규정
 - 소매용에 적용, B2B 거래는 고지 시 2g 이상 트랜스 지방 함유 허용
 - * 덴마크, 아이슬란드, 오스트리아, 라트비아, 스위스 등은 ‘03년부터 기 시행 중

○ 대체 제품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예정

- 관련규정 : Directive (EU) 2019/904
- 빨대, 면봉 및 식사도구(포크, 나이프, 숟가락, 젓가락 등)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함에 따라 다수의 기업에서는 생분해 가능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·생산 중이며, 유리병 제품 제조 확대 중
- 독일은 ‘21년 7월부터 해당 법안 발효 예정이나, 구체적 사항은 추후 확인필요

□ 미 국

- FDA 식품 추적에 필요한 추가 정보 기록 작성 및 보관 규정 제정
 - 고위험군 지정 식품들에 대해 추가적인 추적 기록 관리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, '21년 최종 검토·수정을 거쳐 법안 확정 예정
 - FDA의 Food Traceability List로 지정한 식품*을 제조, 보관하는 업체에 '추적기록관리 조건'을 추가 부과하는 규정안에 따라 한국 수출 농가 및 수출상품 제조업체들은 식품추적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(식품의 재배, 제조, 변형 등)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함
- * 버섯류, 감귤, 배추, 포도, 고춧가루, 무, 김치, 단감, 배, 삼계탕 등
- 참깨 알레르기 유발요소 지정 법안 하원 통과
 - FDA가 참깨를 9번째 대표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하고,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'21년 정기의회에서 도입 추진 예정
- '21.8.13.부터 발효식품(Fermented) 및 가수분해식품(hydrolyzed)의 글루텐프리(Gluten-Free) 라벨링을 위해서는 제조사 측의 영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함

□ 중 국

- 통조림식품 분류 국가표준(GB/T 10784-2020) 발표
 - 수산물, 과일, 야채, 견과류 통조림식품 분류표준을 수정하고, 알류 및 식용버섯 통조림 분류를 국가표준에 추가함
 -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(中国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)에 따라 통조림식품 분류 표준(GB/T 10784-2020)을 '20.7.21.일에 정식 발표하여 '21.8.1.부터 실시됨
- 코엔자임Q10 등 다섯 가지 보건식품 원료목록 제정('21.3.1.~)
 - 코엔자임Q10 등 5가지 보건식품원료* 목록을 제정하였으며, 목록에 해당 원료 사용범위, 기능, 기술지표 및 미생물지표 포함
- * 코엔자임Q10(輔酶Q10), 파벽영지포자분(破壁灵芝孢子粉), 스피루리나(螺旋藻), 오메가(魚油), 멜라토닌(褪黑素)

□ 대 만

- 대만 현지에서 유통되는 **벌크 식품(Bulk Food)**은 모두 **중문 상품명 표시**해야 하며, 필요에 따라 **원산지 표시 필요**(’20.1.1.~)

☞ 벌크 식품 라벨링 규정

- ① 이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(食品安全衛生管理法) 제25조 2항에 따라 제정됨
- ② 이 규정에서 “벌크 식품(散裝食品)”이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 세칙 제20조에 규정된 식품을 말함
- ③ 회사 등록,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식품 판매자가 벌크 식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명과 원산지(국가)를 표시해야 함. 단, 카페나 베이커리, 음식점 등 현장에서 가공 및 조리한 즉석식품은 예외
- ④ 회사 등록,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식품 판매자가 아래의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(국가)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
 - 땅콩(신선, 냉장, 냉동, 탈수, 건조, 분쇄, 분말, 단순절단), 팥, 녹두, 검은콩, 대두, 메밀, 울무, 퀴노아, 참깨, 좁쌀, 마늘, 표고버섯, 찻잎, 말린 대추, 국화, 닭고기, 돼지고기, 양고기, 소고기
- ⑤ 소고기 및 소의 식용 부위를 원료로 하는 벌크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식품 판매업자는 도축 국가(지역)를 기준으로 원산지(국가)를 표시해야 함. 소고기 및 소의 식용 부위에는 우유 및 우지(牛脂)는 포함되지 않음
 - * (’20.9.17. 개정) 소고기 또는 소의 식용 부위, 돼지고기 또는 돼지의 식용 부위를 원료로 하는 벌크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식품판매 업자는 도축 장소(국가) 기준으로 원산지(국가)를 표시해야 함. 원료에는 우유와 우지는 포함되지 않음
- ⑥ (**표시 방법**) 이 규정의 표시는 중문(中文)으로 표시되어야 하며, 카드, 라벨 또는 표시 팻말(보드) 등의 형태로 걸기, 입간판(삽입), 부착 또는 기타 명확하게 표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. 라벨의 경우 글꼴의 길이와 폭은 0.2cm 이상, 기타 형식의 경우 2cm 이상이어야 함

- 대만의 현지 요식업체로 공급되는 **돼지고기(식용가능 돼지고기 부위 포함)**에 대하여 **원산지 표기를 필수 시행함**(’20.1.1.~)

☞ 포장 식품의 돼지고기 및 돼지 식용 부위 원료 원산지 표시 규정

- ①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0관 규정에 따름
- ② 돼지고기와 돼지 식용 부위를 원료로 하는 포장 식품은 용기, 혹은 포장 겉면에 중문(中文)으로 원료의 원산지(국가)를 표시해야 함. 단, 원료에는 라드(豬脂)는 포함되지 않음
- ③ 원산지(국가)는 도축장(국가)을 기준으로 표시해야함

(붙임)

브렉시트 진행경과 및 향후 수출영향 전망

1 브렉시트 진행경과

- ('16.06.23)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(찬성 51.9%, 반대 48.1%)
- ('17.03.29) 영국 정부, EU 집행부에 EU 탈퇴 공식통보
- ('18.11.25) EU 정상회의, 브렉시트 합의안 서명
 - '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시행하여 현행 EU 제도(관세동맹)와 규제 준수
- ('19.07.24) 보리스 존슨 총리 취임
- ('19.10.17) 영국-EU 브렉시트 재협상 타결(북아일랜드에 2개 관세체제 적용)
 - 북아일랜드-EU 상품 이동 시 무관세(실질적 EU체제), 영국 본토 이동 시 관세부가 후 영국령에서 소비될 경우 관세 환급(법적인 영국체제)
- ('20.01.31) 영국, 1973년 EU 가입 후 46년 만에 EU 탈퇴
- ('20.02.01) 브렉시트 전환기간 시작(~'20.12.31)
 - 3.2부터 런던과 브뤼셀에서 영국-EU 미래관계에 관한 협상 진행 중(~현재)
 - 어업권(英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), 공정경쟁환경* 등 이슈로 합의 도달 지연
 - * EU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영국의 환경, 노동, 세제 등 분야 회원국과 동일 의무 이행 요구
- ('20.06.30) 전환기간 연장 요청을 위한 마감시한
- ('20.10.31) 당초 예상한 협정문 합의 마감시한
- ('20.12.10~17) EU 정상회의(10~11), 유럽의회 '20년 마지막 본회의(14~17)
- ('20.12.24) EU-영국 무역협상 타결
 - '21.1.1부터 EU-영국 무역협정 임시발표, '21년 초 유럽의회·회원국 비준
 - EU-영국 상품과 서비스 이동 시 무관세, 다만 통관·검역절차 필요

• 영국은 한국포함 24개 FTA(50개국) 서명완료, EU 등 15개 FTA 협상 중이며 서명된 FTA는 브렉시트 즉시 발효 준비완료

② 영국 시장현황

○ 브렉시트 타결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 증가, “탈 영국” 움직임

탈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0.9월 기준, '16년 이후 영국→유럽 이동한 일자리 약 7,500개 • 금융서비스 기업이 유럽 이전 고려 또는 이전 완료한 도시는 더블린(34社), 룩셈부르크(26), 프랑크푸르트(23), 파리(20) 순
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딜 시 추가 관세로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, 업계 큰 타격 예상 - 승용차에 10%(대형 차량은 22%) 관세 부과 예정 • 혼다, 포드, BMW 등은 영국 부품공장 폐쇄, EU로 이동
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국의 EU 내 금융 서비스 공급 가능여부 불확실성 존재 • 각종 금융·보험사들은 본사 EU 국가로 이전 또는 지사 설립 중 * 유럽은행감독청,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프랑스 파리로 본사 이전('19)
식품/소비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딜 시 EU로부터 수입하는 식품 가격상승 불가피 전망 • 네덜란드 등 EU 국가에 물류창고 구축 중
물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딜 시 '21.1월부터 최대 3개월 영국-EU 통관 혼란 예상 • 운송협회는 새로운 서류작업을 위해 세관중개인 5만 명 이상 추가 고용 필요하나,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

③ 영국 - EU 무역여건 주요변화

○ 전환기간 종료 후 EU와 영국은 각각 별도의 규제와 법률체계 적용

○ 영국↔EU 상품 이동 시 무관세, 다만 통관·검역절차 필요

- EU 역외공통관세를 영국 글로벌관세(UKGT)로 대체, 국경 간 상품통제 예정
- * 중간재, 영국의 미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·철폐, 농어업 및 자동차는 기존 유지
- EU 경유 영국으로 수출 시 일부는 한-영 FTA 특혜관세 한시적 인정(3년)
- 단, 북아일랜드-EU간은 EU 체재 하 무관세 혜택, 자유로운 상품 이동 가능

○ 영국-EU 간 역외통관절차 부활로 컨테이너 통관지연 가능

- 노딜 브렉시트 시 '21.1월 약 7천대의 EU 수출행 트럭이 도버(Dover)해협에서 대기 가능, 통관 혼란 최대 3개월까지 지속 예상

4 대 영국 농식품 수출현황

- 영국은 네덜란드에 이어 한국 농식품의 두 번째 수출대상국
- '20년 11월까지 對英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.4% 감소한 69.2백만불
 - '19년 전체 수출의 약 30%를 차지한 혼합조제식료품, 참치 수출급감 영향

<참고2> 대 유럽 농식품 수출 상위 5개국

(단위 : 천 톤, 백만불, %)

구분	2019년				2020.1.1.~11.30(B)			증감률(B/A)	
	연간		1.1~11.30(A)		물량	금액		물량	금액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	비중(%)			
총계	250.1	559.8	225.1	507.4	218.1	508.3	100.0	△3.1	0.2
네덜란드	41.2	99.7	37.2	91.4	50.5	107.5	21.2	35.9	17.7
영국	26.2	75.9	24.2	70.2	20.4	69.2	13.6	△15.6	△1.4
독일	15.2	68.6	13.6	62.3	14.0	61.4	12.1	2.7	△1.4
스페인	31.1	42.9	26.0	35.8	33.5	58.1	11.4	28.8	62.4
프랑스	25.3	73.5	22.2	66.2	12.7	52.8	10.4	△43.1	△20.3

- 주요 유통망 중심 영업 확대와 코로나19 특수로 '20년 라면과 김치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했으며, 특히 라면은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
- 한인·에스닉 채널과 더불어 테스코, 아스다(ASDA) 등 대형 유통체인과 잇수(itsu) 등 외식체인을 통한 판매가 점차 확대되며 김, 냉동만두(기타파스타), 고추장 등 주요품목들도 호조세 지속
 - 다만 알로에 음료는 타국산과 가격경쟁 심화, 코로나19 따른 외식업체 영업 중단으로 여름 성수기 물량이 대폭 감소하며 수출부진

<참고3> 대 영국 주요 수출품목

(단위 : 천 톤, 백만불, %)

구분	2019년				2020.1.1.~11.30(B)		증감률(B/A)	
	연간		1.1~11.30(A)		물량	금액	물량	금액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			
총계	26.2	75.9	24.2	70.2	20.4	69.2	△15.6	△1.4
라면	3.1	13.3	2.7	11.7	3.8	16.4	40.8	39.6
혼합조제식료품	7.9	15.7	7.7	15.2	3.3	11.9	△56.7	△21.7
김	0.3	6.2	0.2	5.4	0.3	7.0	2.4	28.3
김치	0.9	3.3	0.8	3.0	0.8	3.5	2.0	16.3
참치	0.5	5.8	0.5	5.8	0.3	3.2	△35.2	△44.0
기타파스타	0.9	2.8	0.8	2.6	0.8	2.7	5.4	5.2
음료	4.3	3.6	4.0	3.2	2.7	2.2	△30.7	△30.7
고추장	0.5	1.2	0.4	1.1	0.5	1.4	14.1	26.6

5] 향후 대 영국 수출영향

- 한-영 FTA 타결('19.8)로 영국과 EU로 직수출 시 관세는 현재와 동일수준
 - 한-EU FTA 규정 대부분 승계
 - 관세인하 시점을 한-EU 발효시점('11.7.1)으로 규정, 한-영 FTA는 한-EU의 10년차 양허 스케줄 적용
 - '20.12.31 전환기간 종료 시 벨기에 시간(CET)으로 '21.1.1 0시부터 적용
 - 한↔영 간 운송 시, EU 경유할 경우 3년 한시적으로 한-영간 직접운송 간주
 - * 단, EU내 세관 통제 하에서 하역,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등만을 수행할 경우 인정(입증서류 제출필요)
- 신규 통관기준 적용에 따른 수입자, 세관 혼선으로 초반 통관 정체 우려
 - 기준 확인, 요구서류 변경에 따른 심각한 혼란으로 최대 3개월 통관지연 가능
- 무관세 불구, 영국↔EU 상품교역 시 검역·통관 절차가 부활됨에 따라 향후 영국 내 한국식품 수입은 점차 자국 내 소비 수요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음
 - 영국은 유럽국가 중 한국 농식품 두 번째 수출대상국(1위 네덜란드)으로 영국으로 수입된 한국식품은 아일랜드, 프랑스 등 EU 각국으로 유통 중
 - 검역·통관에 따른 시간 소요로 EU로 직수출 확대 전망
 - * 예로 소비시장이 작은 아일랜드는 영국 수입제품을 구매하여 아시안 마켓 등에서 판매 가능했으나, 가격부담으로 네덜란드, 독일 수입제품 구매 확대 중
- EU와 별도의 식품관련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초반 수출기업 혼선 우려
 - '21년부터 대 영국 수출 시 영국의 새로운 식품법과 라벨링 규정 적용
 - '22.10월부터 영국(잉글랜드, 스코틀랜드, 웨일즈) 판매 제품은 영국 내 식품 업체(Food Business Operator) 또는 수입업체의 주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
 - EU 유기농 인증은 '21.12.12까지만 유효
 - * 북아일랜드는 EU의 규정 적용 예정, 상기 제도는 영국-EU 최종 합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

※ 참고자료 :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

- <https://www.kita.net/cmmrcInfo/cmercInfo/cmercReport/cmercReportDetail.do?pageIndex=1&no=2139>